

광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551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2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2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월경부터 C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9.자 매매계약(거래가액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2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30, 2018하면730으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8.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행위로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6067).

마. 이 법원은 2019. 5.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나56677)은 2020. 4. 22.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이 법원은 2020. 7. 2. C이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파산을 폐지하였고, 원고는 2020. 12. 22.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8. 5.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확약서를 교부한 사실, C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30, 2018하면730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무이행확약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1. 채무액 102,600,000원

C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2014. 2. 6.부터 2017. 3. 14.까지 5회에 걸쳐 차용한 금액 75,000,000원과 2018. 2. 21.부터 2018. 2. 26.까지 계금미납금 27,600,000원 합계 102,6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5. 25.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① 전남 영광군 D외 5필지 E빌라 제1층 F호

② 전남 영광군 D외 5필지 E빌라 제1층 G호(이 사건 부동산)

위 E빌라는 C 소유이나 C이 채무가 많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6. 9. 6.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자 H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놓았고, C은 201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I에게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았으므로, C은 위 부동산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재력이 있으므로 틀림없이 102,600,000원을 2018. 5. 25.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 그러나 갑 제1, 17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허위로 H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는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같은 빌라 제1층 F호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C에게

8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C은 2019. 2. 18. H에게 ‘원고에게 교부한 채무이행확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8. 11. 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2018. 11.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그 취소원인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8. 11. 12.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2. 2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던 2020. 7.

2.에야 비로소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② C에 대한 면책불허가 결정 및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C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사라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초 제기한 사해행위 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 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행사할 부인권과 별도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그 이후 C에 대한 파산절차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때는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이어서 결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나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참조),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5)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행사하는 부인권의 행사만으로 대상 권리관계의 부인 또는 취소 여부와 그에 따른 공동담보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절차는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그러한 입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권리행사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6)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행사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이 아닌 ‘파산절차가 폐지된 날’로 본다거나, 이미 각하되어 확정된 채권자 취소소송의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7)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이해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남 영광군 D, J, K, L, M, N에 있는 E빌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상가 및 사무실

1층 1,231.629㎡

2층 1,092.085㎡

3층 1,074.685㎡

지하층 28.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남 영광군 D 대 217㎡

2. 전남 영광군 J 대 1,125㎡

3. 전남 영광군 K 대 161㎡

4. 전남 영광군 L 대 222㎡

5. 전남 영광군 M 대 223㎡

6. 전남 영광군 N 대 2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G호 철근콘크리트조 6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212분의 42.669

2 내지 6 소유권대지권 2,212분의 42.669. 끝.

1)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주위적 청구인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